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규정

- 제정 : 2019. 6. 18.
- 개정 : 2020. 3. 13.
- 개정 : 2020. 11. 9.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22조 및 제22조의 4에 의거하여 수원과학대학교의 사명, 비전 교육목표 및 인재상 등을 달성하고 직업기초능력과 직무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교육과정”이란 학과가 교육내용과 학습활동을 체계적으로 편성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교육의 체계로서, 교과목명, 이수구분, 학점, 시수, 이수시기 등으로 구성된다.

② “교과”란 일정한 특성을 갖는 교과목들을 묶는 분류로서, 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교양교과와 전공교과로 구성된다.

③ “교육과정 개발”이란 환경분석 및 요구분석, 인력양성유형 및 목표 설정, 직무 정의 및 직무 모형 설정, 교과목 도출, 교육과정 로드맵 작성 등의 타당한 절차에 따라 새로운 교과목을 재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④ “교육과정 개편”이란 기존에 편성되어 있던 교과목 중 일부 교과목을 타당한 절차에 따라 보완·변경하여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⑤ “교육과정 편성”이란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과목명, 이수구분, 학점, 시수, 이수시기들을 정하여 교육과정 내에 교과목을 체계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 2 장 교육과정 개발 및 개편

제3조(교육과정 개발 및 개편) ① 교육과정 개발(개편)의 진행과 심의는 교육과정위원회에서 담당한다.

② 교육과정 개발(개편)은 2년제 학과는 2년, 3년제 학과는 3년, 4년제 학과는 4년 주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과정 성과 평가 및 대학의 교육정책에 따라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정 개발(개편)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③ 교육과정을 개발(개편)하고자 하는 학과나 기구에서는 '교육과정 개발(개편) 계획서'를 주관부서에 제출하고, 위원회에서 필요성을 검토하여 대상 학과를 선정한다.
- ④ 주관부서에서는 교육과정연구개발(개편)보고서를 비롯한 관련 문서 양식과 전체 개발(개편)일정을 수립해 공지하고, 대상 학과는 정해진 기한 내에 관련 양식의 문서를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 ⑤ 교육과정 개발(개편)에는 현행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를 통해 도출된 개선사항과 재학생, 졸업생, 산업체 등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설문 및 심층 인터뷰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조사하여 반영해야 한다.
- ⑥ 개발(개편)된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다.
- ⑦ 교육과정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대학은 행·재정적인 지원과 교육과정 개발 컨설팅 TFT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⑧ 교육과정 개발(개편)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학평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 ⑨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발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제4조(교양교육과정 개발 및 개편) ① 교양교육과정 개발(개편)은 교양교육과정위원회에서 담당한다.

- ② 교양교육과정은 다음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개편)한다.
 1. 대·내외적 여건 분석, 학생 요구분석을 고려한 대학발전계획
 2. 교양 교육목표, 인재상, 인재양성 유형
 3. 직업기초능력과의 연계성
 4. 대학의 핵심역량

제5조(전공교육과정 개발 및 개편) ① 전공교육과정 개발(개편)은 학과별 교육과정개발위원회에서 담당하며, 교육과정개발위원회는 산업체 현장실무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 ② 전공교육과정은 다음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개편)한다.
 1. 대·내외적 여건 분석, 전공 동향 분석, 학생 요구분석을 고려한 대학발전계획
 2. 학과 교육목표, 인재상, 인재양성 유형
 3.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혹은 자체직무분석에 따라 도출된 직무역량
 4. 대학의 핵심역량과 학과의 전공역량

제 3 장 교육과정 편성

제6조(교육과정 편성) ① 교과는 교양교과와 전공교과로 구분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하며, 세부영역은 각호와 같다.

1. 교양교과: 교양 필수, 교양일반 선택
2. 전공교과: 전공 필수, 전공일반 선택

- ② 교과목은 1학점 당 1시수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학년별 학기당 편성 학점은 36학점 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 학년제별 교양 편성학점, 전공 편성학점 및 총 편성학점은 다음과 같다.

| 학년제 | 교양 편성학점 | 전공 편성학점 | 총 편성학점 |
|-----|---------|-------------|----------|
| 2년제 | 10 | 50~65학점 이내 | 75학점이하 |
| 3년제 | 14 | 86~97학점 이내 | 111학점 이하 |
| 4년제 | 26~28 | 90~117학점 이내 | 143학점 이하 |

제7조(교양교육과정 편성) ① 교양교과목 당 학점은 1학점 또는 2학점으로 한다.

- ② 교양교과는 직업기초교양 및 핵심역량교양으로 구분하여 편성하며, 직업기초교양의 편성학점은 2학점으로 한다.
- ③ 대학의 교육정책에 따라 특정 교양교과목에 대하여 학과에서 의무 편성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④ 교양교과는 1학년과 2학년에만 편성하며, 각 학기별 학점 편성기준은 다음과 같다.

| 학년제 | 1학년 | | 2학년 | |
|-----|---------|---------|--------|--------|
| | 1학기 | 2학기 | 1학기 | 2학기 |
| 2년제 | 4~6학점 | 4~6학점 | - | - |
| 3년제 | 4~6학점 | 4~6학점 | 2학점 이하 | 2학점 이하 |
| 4년제 | 12학점 이내 | 12학점 이내 | 4학점 이내 | - |

- ⑤ 필요한 경우 학과 및 부서에서 교양교과목의 개설 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전공교육과정 편성) ① 전공교과목 당 학점은 3학점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현장실습은 매학기 개설할 수 있으며, 상세한 사항은 현장실습운영규정에 따른다.
- ③ 필요한 경우 부서에서 특정 학과에 전공교과목의 개설 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비교과교육과정 편성) ① 비교과교육과정에는 원칙적으로 이수구분 또는 학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 ② 비교과교육과정 편성에 관한 사항은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 4 장 교육과정 평가 및 환류

제10조(교육과정 평가 및 환류) ① 각 학과는 매 학기 종강 후 학과의 교육과정 운영 결과가 학과의 교육목표와 부합되게 운영되었는지를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한 학과 교육과정 품질 관리(CQI) 자체평가 보고서(이하 “학과CQI자체평가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해 제출한다.

② 역량교육센터는 역량기반 교육의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위해 학과CQI자체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역량기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대학 교육과정 품질관리 자체평가 보고서(이하 “대학CQI자체평가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해 제출한다.

③ 대학CQI자체평가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양 교육과정 품질관리(CQI) 자체평가 보고서
2. 전공 교육과정 품질관리(CQI) 자체평가 보고서
3. 비교과 교육과정 성과평가 보고서

④ 교육과정위원회는 대학CQI자체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역량기반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결과를 심의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한다.

⑤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담은 대학CQI자체평가보고서는 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 학과 및 부서에 배포한다.

⑥ 학과 및 부서의 장은 대학CQI자체평가보고서에 수립된 교육품질개선방안을 시행한다.

제11조(교양교과목 신설 및 폐지) ① 교양교육과정위원회에서는 교양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결과를 심의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차년도 교양 교육과정 편성에 반영한다.

② 교양교육과정위원회는 1항의 평가를 바탕으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교과목의 신설 또는 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1. 신설: 대학의 사명 및 교육목표에 부합하고, 대학의 교양교육 정책 및 산업체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 분석결과 개설의 필요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경우
2. 폐지: 대학의 사명 및 교육목표에 부합하지 않거나 중요성이 부족해진 경우 또는 수강 수요가 적거나 교육효과가 낮다고 평가되는 경우

③ 교양교과목의 신설 및 폐지 결과는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재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